

◆◆◆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기 간 : 2021. 11. 8. ~ 11. 12.(5일간)
- 대 상 : ◆◆◆
- 감사범위 : 2018. 11. 1. ~ 감사일 현재까지
- 감사인원 : 1개반 6명(감사정보담당관 외 5명)
- 감사중점사항
 - 예산, 회계 등 기관운영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 출장, 휴가,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등 복무규정 준수여부
 -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 방치 등 직무태만 행위
 - 공사 및 용역 설계 적정성 및 공사 시공 사후 관리 실태
 - 기타 업무 전반의 문제점 및 민원발생 등

2. 감사결과

○ 행정상

(단위 : 건)

| 계 | 본 처 분 | | | 현지처분 | | 비 고 |
|----|-------|-----|-------|------|-----|-----|
| | 시 정 | 주 의 | 개선/권고 | 시 정 | 주 의 | |
| 16 | 6 | 8 | | 2 | | |

○ 재정상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회 수 | 추징·부과 | 감 액 | 지 급 |
|-------|-------|-------|-------|-----|-----|
| 계 | 1,374 | 1,374 | | | |
| 본 처 분 | 1,374 | 1,374 | | | |
| 현지처분 | | | | | |

○ 신분상

(단위 : 명)

| 계 | 중징계 | 경징계 | 훈계 | 주의 | 비고 |
|---|-----|-----|----|----|----|
| - | - | - | - | - | -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본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 : 건 / 천원】

| 연번 | 제 목 | 처 분 요 구 사 항 | | | | | | | |
|----|--------------------|-------------|----|-------|----|----|-------|----------|----|
| | | 신 분 상 | | 행 정 상 | | | 재 정 상 | | |
| | | 징계 | 주의 | 시정 | 주의 | 개선 | 계 | 회수 징수 | 감액 |
| 계 | 14건 | | | 6 | 8 | | | 1,374 | |
| 1 |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정리 소홀 | | | 1 | | | | | |
| 2 | 건설공사 사후정산 미실시 | | | 1 | | | | 511 | |
| 3 |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 | | 1 | | | | 643 | |
| 4 | 준공(물품)검수 소홀 | | | | 1 | | | | |
| 5 |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소홀 | | | | 1 | | | | |
| 6 |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 | | 1 | | | | |
| 7 | 지역개발 채권 매입 소홀 | | | 1 | | | | 220 | |
| 8 |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 | | 1 | | | | | |
| 9 | 농지원부 관리 소홀 | | | 1 | | | | | |
| 10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 | | | 1 | | | | |
| 11 | 이장수당 지급 소홀 | | | | 1 | | | | |
| 12 | 물품 용역 계약 대가의 지급 소홀 | | | | 1 | | | | |
| 13 |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확인 소홀 | | | | 1 | | | | |
| 14 | 전입신고 사후 관리 소홀 | | | | 1 | | | | |

○ 현지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 : 건 / 천원】

| 연번 | 제 목 | 처 분 요 구 사 항 | | | | | | | |
|----|---------------------------|-------------|----|-------|----|----|-------|----------|----|
| | | 신 분 상 | | 행 정 상 | | | 재 정 상 | | |
| | | 징계 | 주의 | 시정 | 주의 | 개선 | 계 | 회수 징수 | 감액 |
| 계 | 2 건 | | | 2 | | | | | |
| 1 | 복무 관리 소홀 | | | 1 | | | | | |
| 2 | 건설공사 폐기물처리비 정산서류 확인 소홀 | | | 1 | | | | |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정리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보존기간 기록물 미정리 현황

| 일련번호 | 생산연도 | 기록물철 제목 | 보존기간 | 비 고 |
|------|------|----------------|------------|-----|
| 1 | 2013 | 장애인서비스 신청서(2권) | 2018.12.31 | |
| } | | | | |
| 12 | 2013 | 이륜 자동차 사용신고서 | 2018.12.31 | |

※ 내역 : < 별 첨 > 과 같음

2. 위법·부당내용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법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 및 제5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기록물 평가심의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43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공주시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영 제4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되,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공주시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 그럼에도 ◆◆◆에서는 공주시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폐기연장등 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위 보존기간 기록물 미정리 현황과 같이 “장애인서비스 신청서(2권)” 외 11건의 기록물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정리되지 않고 ◆◆◆ 기록관에 보관하고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보존기간 기록물을 정리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보존기간 기록물 미정리 현황

| 일련 번호 | 생산연도 | 기록물 제목 | 보존기간 | 비 고 |
|----------|------|-----------------|------|-----|
| 1 | 2013 | 장애인 서비스 신청서(2권) | 5년 | |
| 2 | 2013 | 수당지급 신청서 | 5년 | |
| 3 | 2013 | 지방세 납세증명(2권) | 5년 | |
| 4 | 2013 | 전입신고(3권) | 5년 | |
| 5 | 2013 | 주민등록표 일일결산(5권) | 5년 | |
| 6 | 2013 | 장애인 서비스 신청서(2권) | 5년 | |
| 7 | 2013 | 수당지급 신청서 | 5년 | |
| 8 | 2013 | 초중고 교육지원(3권) | 5년 | |
| 9 | 2013 | 제59회 백제문화제(3권) | 5년 | |
| 10 | 2013 | 기록물 관련서류 | 5년 | |
| 11 | 2013 | 감사 관련 서류 | 5년 | |
| 12 | 2013 | 이륜 자동차 사용신고서 | 5년 | |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사후정산 미 실시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511,000원(회수)

【지적내용】

1. 현 황

(금액 : 천원)

| 공 사 명 | 공 사 내 용 | 도급액(천원) | | 증·감 | 공사기간 | 지적내용 | 도급자 |
|-------------------|----------------------|---------|--------|-----|----------------------------|-------------------------------|-----|
| | | 계약 | 정산 | | | | |
| 합 계 | 1 건 | 11,440 | 10,929 | 511 | | | |
| **리 하천 석축 보수공사 | 소교량(3.6*1.8) L=4m | 11,440 | 10,929 | 511 | 2019.11.01. ~2019.11.25 | 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정산 | A |

2. 위법·부당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리 하천 석축 보수공사 1건】를 준공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를 하였음에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나 관련서류를 준공일 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 511천원을 정산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건설사업 추진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산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급된 건설공사 1건의 합계 511천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643,000원(회수)

【지적내용】

1. 현 황

(금액 : 천원)

| 공 사 명 | 공 사 내 용 | 도금액(천원) | | 증·감 | 공사기간 | 지적내용 | 도급자 |
|--------------------|---|---------------|---------------|------------|----------------------------|-----------------------|-----|
| | | 계약 | 정산 | | | | |
| 합 계 | 4 건 | 52,230 | 51,587 | 643 | | | |
| !!! 농로 확포장공사 | 콘크리트포장 B=2.5m L=146m B=3.0m L=92m | 19,100 | 18,919 | 181 | 2019.11.18. ~2019.12.09 | 수축줄눈 (프라미어) 미시공 | A |
| ## 석축 설치공사 | 옹벽블럭설치 (1000*800) L=10m 플룸라(400*400) L=25m | 11,940 | 11,878 | 62 | 2019.11.01. ~2019.11.19 | 부직포 미설치 | B |
| @@@ 배수시설 정비공사 | 홍관설치(D450) L=12.5m 콘크리트포장 A=140㎡ | 11,480 | 11,180 | 300 | 2019.05.30. ~2019.07.03 | 홍관기초 미설치 | C |
| \$\$\$ 농로 확포장공사 | 콘크리트포장 B=3.0m L=152m | 9,710 | 9,610 | 100 | 2019.04.30. ~2019.05.27 | 수축줄눈 (프라미어) 미시공 | D |

2.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건설공사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 및 제73

조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에서는 상기와 같이 「!!!리 농로 확포장공사의 3건」을 추진하면서 줄눈(프라이머)을 미시공하거나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시공하는 등의 설계서에 반영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 후 준공서류를 접수하였고, 상기 공정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공사비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절차 없이 부당하게 공사비 643천원을 지출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시설물의 품질관리 등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건설공사 설계 및 공사 감독시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에 따라 설계의 검토 및 건설공사 감독(준공)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과도하게 지급된 건설공사 4건의 합계 643천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준공(물품) 검수 소홀

【기 관 명】 ◆◆◆사무소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준공(물품)검수 현황

| 일련번호 | 계 약 명 | 도급(납품)자 | 계약금액 (천원) | 준공납품계 제출일 | 검수일 | 검수기한 | 지연일 | 비 고 |
|------|--------------------------------------|---------|--------------|--------------|-------------|-------------|-----|-----|
| | 1건 | | | | | | | |
| 1 | %%리 농로확포장공사 | A | 4,400 | 2020.1.29. | - | 2020.2.11. | - | 미시행 |
| 2 | &&&리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레미콘 | B | 1,582 | 2019.3.22. | 2019.5.23. | 2019.4.4. | 48 | |
| 3 | ***리 배수로 정비공사 관급자재/벤치플륨관 | C | 1,170 | 2020.5.12. | 2020.5.28. | 2020.5.26. | 2 | |
| 4 | ++++등 5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관급자재(벤치플륨관) | D | 4,176 | 2020.11.3. | 2020.11.18. | 2020.11.16. | 2 | |

나. 위법 · 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64조(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아무런 사유 없이 +1리 농로 확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하여 위 검수 현황과 같이 검수를 지연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및 소홀

【기 관 명】 ◆◆◆사무소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하자검사 현황

| 구 분 | | 정기 하자검사 | | | 완료검사 | | | | 비 고 |
|---------------------|-----|---------|----|-----|------------------------------------|----|-----|--------|--------------------|
| | | 대상 | 검사 | 미검사 | 대상 | 검사 | 미검사 | 기한 미준수 | |
| 계 | | 549 | 4 | 545 | 4 | 4 | 0 | 0 | |
| 2018년 | 하반기 | 39 | 4 | 35 | 4 | 4 | 0 | 0 | |
| 2019년 | 상반기 | 128 | 0 | 128 | 하자검사 대장 미작성으로 대상 수 산정 불가 | | | | 2018~2019 발주 공사 |
| | 하반기 | | | | | | | | |
| 2020년 | 상반기 | 193 | 0 | 193 | | | | | 2018~2020 발주공사 |
| | 하반기 | | | | | | | | |
| 2021년 (11.12.현재) | 상반기 | 189 | 0 | 189 | 2019~2021 발주공사 | | | | |

※ 하자검사 대장 미작성하여 연도별 공사 건 수 3년 누적분 으로 정기검사 대상 수 산정

2.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가 완료된 경우 하자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매년 2회 이상 정기 검사를 하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마지막으로 하자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정기 하자검사와는 별도로 하자(만료)검사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553건(정기 549건, 하자검사 대장 미작성으로 만료건 대상 수 산정 불가)에 대하여 정기 549건 및 만료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하자검사 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검사 대상 수를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에도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책임기간 이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는 자체예산으로 보수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하자검사 대장을 작성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기 관 명】 ◆◆◆사무소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과목 부적정

| 지출 사유 | 지출금액 | 지급일자 | 집행과목 | 적정과목 | 비고 |
|---------------------------|--------|-------------|------|------|-------------|
| 1건 | 49,000 | | | | |
| 면장실 및 각종회의 시 접대용 음료 구입 | 49,000 | 2018.02.06. | 부서 | 기관 | 자체계획 미수립 |

○ 50만원 이상 명단 미첨부 및 1인 단가 과지급

| 지출 사유 | 지출금액 | 지급일자 | 명단 여부 | 적정금액 | 비고 |
|---|---------|-------------|----------|---------|-------------|
| 1건 | 580,800 | | | | |
| 2020년 하반기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송별회 급식 (급식인원 13명) | 580,800 | 2020.07.09. | 부 | 390,000 | 자체계획 미수립 |

2.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별표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제8호(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목의 규정에 따라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 및 다과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공통경비이므로 부서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소수의 일부 직원이 아닌 전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집행되어야 한다.

⇒ 그러함에도 **◆◆◆사무소에서는 부서운영비를 집행하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목적의 방문민원인 접대 목적의 사무실 운영 음료를 구입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그러함에도 **◆◆◆사무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5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도 주된 상대방의 소속 등을 기재한 명단을 증빙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에 따라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직자에 대해 3만원 이하로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러함에도 **◆◆◆사무소에서는 2020년 하반기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송별회를 추진하면서 공직자에 대해 3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지역개발채권 및 수입인지(증지) 매입 소홀

【기 관 명】 ◆◆◆사무소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환 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지역개발채권 매입현황

(단위 : 천원)

| 사 업 명 | 대 가 지급일 | 계약금액 (지급금액) | 공급가액 | 적정 금액 | 매입 금액 | 과소 매입 금액 | 도급자 | 비 고 |
|---|------------------------|----------------|--------|----------|----------|----------------|-----|----------|
| 합 계 | 6건 | 15,605 | 14,044 | 315 | 105 | 220 | | 명령 번호 |
| 생활민원사업 시행결의[2019년 본예산 / ~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 2019.5.3. | 4,010 | 3,609 | 90 | 65 | 35 | A | 196 |
| 생활민원사업 시행결의[2019년 본예산 / @@리 준설공사 1식] | 2019.5.28. | 1,237 | 1,113 | 25 | 0 | 25 | B | 233 |
| 생활민원사업 시행결의[2019년 본예산/###리 마을회관 마당조성 추가공사] | 2019.7.16. | 1,900 | 1,710 | 40 | 0 | 40 | C | 325 |
| 2019년 하천 취입보 준설사업 장비임차 결의(1차) | 2019.7.29. | 2,750 | 2,475 | 60 | 0 | 60 | D | 64 |
| \$\$\$리 마을회관 진입로 안전 바 설치공사 | 2019.11.26. | 2,948 | 2,653 | 65 | 40 | 25 | E | 513 |
| 주민자치프로그램(난타 교실) 난타복 구입 | 2019.12.16. | 2,760 | 2,484 | 35 | 0 | 35 | F | 552 |

□ 수입인지(증지)

(단위 : 천원)

| 사 업 명 | 대 가 지급일 | 계약금액 | 적정인지 금액 | 징수금액 | 미징수 금액 | 도급자 | 비 고 (명령번호) |
|----------------|------------|--------|---------|------|--------|-----|------------|
| | | | 적정증지 금액 | 징수금액 | | | |
| 합 계 | | 20,800 | 60 | 40 | 20 | | |
| &&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 2020.4.8. | 10,000 | 20 | 20 | 0 | Z | 126 |
| | | | 10 | 0 | 10 | | |
| &&리 농로포장공사 | 2020.6.30. | 10,800 | 20 | 20 | 0 | X | 290 |
| | | | 10 | 0 | 10 | | |

2. 위법·부당사항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1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금공급 가액의 2.5/100를,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인 경우에는 대금공급가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하여야 한다.

⇒ 그러함에도 ◆◆◆사무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마을안길 보수공사 외 5건(총 공급금액 14,044천원)을 계약 체결하면서 지역개발채권 220천원을 과소 매입한 사실이 있음.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의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4에 따라 1천만원~3천만원의 계약서에 정부수입인지 2만원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징수방법)에 따라 수의계약의 경우 공주시 수입증지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그러함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1건(총 공급금액 20,800천원)을 계약 체결하면서 공주시 수입증지 20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 [별표1]의 규정 및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징수방법)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220천원 및 공주시 수입증지 20천원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장애인 자격상실자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현황

* 대상기간 : 2018. 11. 1. ~ 현재

|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장애 유형 | 자격상실 | | 장애인등록증 반납 현황 | | 비고 |
|----|-----|-----------|----------------------|------|-----------|--------------|-------------|----|
| | | | | 사유 | 취소일 | 반납여부 | 반납통보서 송달 일자 | |
| 1 | | 38.2.9. | 지체(상지절단)장애 3급 | 사망말소 | 18.11.16. | 부 | 미송달 | |
| 2 | | 70.5.16. | 지적장애 1급 | 사망말소 | 19.1.29. | 부 | 미송달 | |
| 3 | | 36.6.10. | 청각(청력)장애 6급 | 사망말소 | 19.3.9. | 부 | 미송달 | |
| 4 | | 36.4.16. | 청각(청력)장애 5급 | 사망말소 | 19.4.24. | 부 | 미송달 | |
| 5 | | 45.11.21. | 청각(청력)장애 1급 | 사망말소 | 19.4.29. | 부 | 미송달 | |
| 6 | | 35.12.17. | 지체(척추)장애 4급 | 사망말소 | 19.5.7. | 부 | 미송달 | |
| 7 | | 45.8.4. | 지적장애 1급 | 사망말소 | 19.6.5. | 부 | 미송달 | |
| 8 | | 25.2.20. | 청각(청력)장애 심한 장애 | 사망말소 | 19.7.11. | 부 | 미송달 | |
| 9 | | 38.11.16. | 지체(하지기능)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말소 | 19.10.5. | 부 | 미송달 | |
| 10 | | 43.3.14. | 시각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말소 | 19.10.17. | 부 | 미송달 | |
| 11 | | 35.3.1. | 청각(청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말소 | 19.11.6. | 부 | 미송달 | |
| 12 | | 37.9.16. | 지체(하지관절)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말소 | 19.11.23. | 부 | 미송달 | |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장애 유형 | 자격상실 | | 장애인등록증 반납 현황 | | 비고 |
|----|----|-----------|-------------------------|-------|-----------|--------------|-------------|----|
| | | | | 사유 | 취소일 | 반납여부 | 반납통보서 송달 일자 | |
| 13 | | 48.5.9. | 지네(하지관절)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말소 | 19.12.3. | 부 | 미송달 | |
| 14 | | 28.8.25. | 청각(청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말소 | 19.12.30. | 부 | 미송달 | |
| 15 | | 39.11.23. | 정신 장애 심한 장애 | 사망말소 | 20.1.11. | 부 | 미송달 | |
| 16 | | 35.9.30. | 지체(상지기능) 심한 장애 | 사망말소 | 20.1.20. | 부 | 미송달 | |
| 17 | | 43.2.27. | 청각(청력)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말소 | 20.2.12. | 부 | 미송달 | |
| 18 | | 90.12.16. | 지적장애 심한 장애 | 사망말소 | 20.2.22. | 부 | 미송달 | |
| 19 | | 47.8.27. | 지체(하지기능) 심한 장애 | 사망말소 | 20.3.6. | 부 | 미송달 | |
| 20 | | 48.7.23. | 뇌병변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말소 | 20.3.30. | 부 | 미송달 | |
| 21 | | 58.11.19. | 신장장애 심한 장애 | 사망말소 | 20.4.4. | 부 | 미송달 | |
| 22 | | 88.2.5. | 자폐성 장애 심한 장애 | 사망말소 | 20.4.7. | 부 | 미송달 | |
| 23 | | 42.3.15. | 뇌병변장애 심한 장애 | 사망말소 | 20.6.7. | 부 | 미송달 | |
| 24 | | 52.6.8. | 신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말소 | 20.8.6. | 부 | 미송달 | |
| 25 | | 54.3.13. | 지적장애 심한 장애 | 사망말소 | 20.8.17. | 부 | 미송달 | |
| 26 | | 37.1.16. | 지체(척추)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말소 | 20.9.16. | 부 | 미송달 | |
| 27 | | 35.10.19. | 청각(청력)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말소 | 20.10.16. | 부 | 미송달 | |
| 28 | | 53.2.28. | 지적장애 심한 장애 | 사망말소 | 20.10.29. | 부 | 미송달 | |
| 29 | | 25.7.10. | 청각(청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말소 | 20.11.22. | 부 | 미송달 | |
| 30 | | 62.8.12. | 뇌병변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말소 | 20.12.18. | 부 | 미송달 | |
| 31 | | 86.10.7. | 지적장애 심한 장애 | 사망말소 | 20.12.20. | 부 | 미송달 | |
| 32 | | 39.11.26. | 뇌병변장애 심한 장애 | 사망말소 | 21.1.10. | 부 | 미송달 | |
| 33 | | 36.1.9. | 지체(하지관절)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말소 | 21.1.17. | 부 | 미송달 | |
| 34 | | 39.7.28. | 청각(청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의심자 | 21.3.20. | 부 | 미송달 | |
| 35 | | 55.1.3. | 청각(청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말소 | 21.4.24. | 부 | 미송달 | |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장애 유형 | 자격상실 | | 장애인등록증 반납 현황 | | 비고 |
|----|----|-----------|-----------------------|------|----------|--------------|-------------|----|
| | | | | 사유 | 취소일 | 반납여부 | 반납통보서 송달 일자 | |
| 36 | | 31.3.9. | 지체(척추)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말소 | 21.6.26. | 부 | 미송달 | |
| 37 | | 28.11.27. | 청각(청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말소 | 21.7.19. | 부 | 미송달 | |
| 38 | | 36.10.22. | 뇌병변 심하지 않은 장애 | 사망말소 | 21.8.16. | 부 | 미송달 | |

나. 위법·부당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 및 부정 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 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 된 38명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미회수 하였으며,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미발송 하는 등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된 38명에 대하여 즉시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농지원부 관리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농지원부 정비대상 현황

| 농지원부 정비대상 | | | | | | | 비 고 |
|-----------|------------|-------------|------------|-------------------|------------|-------------|-----|
| 총 계 | 소유권 변 동 | 임차종료 농 가 | 사 망 말소자 | 한세대 농지원부 중복 | 경 작 미달자 | 경 작 확인대상 | |
| 223 | 40 | 125 | 2 | 8 | 11 | 37 | |

※2021.11.12.현재 새올행정시스템 기준

2. 위법·부당사항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1항 및 3항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규정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1천제곱

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농지업무편람(농림축산식품부) “제3장 농지원부, 3. 농지원부관리, 나. 농지원부 정비”에 따르면 소유권 변경된 농지는 현실에 맞게 수정, 임차종료농가는 개인간 임대차농지는 임차농에게 ‘임차기간만료농지 정비계획 통보’ 후 20일 이내 소명이 없는 경우 직권삭제하고, 농지은행, 임대차 농지는 농지은행의 임대차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정비, 한 세대에 2개 이상 중복 구축된 농지원부는 농업경영을 주로하는 농가주를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정리한 후 나머지 농지원부는 삭제 처리, 경작면적이 기준면적 1,000㎡미만일 경우(시설재배의 경우 300㎡미만) 농지원부 폐쇄 및 사본편철 처리, 경작사실확인대상은 해당 농지의 경작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등 농지원부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6개 항목 223건에 대하여 농지원부 정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 ◆◆◆장은 농지업무편람 농지원부 정비를 참고하여 농지원부 일제정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 정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현황

| 신청일자 발급일자 | 신청인 | 농지소재지 | | 취득면적 (㎡) | 초과면적 (㎡) | 비고 |
|----------------------------|-----|-------|----|---------------------|-------------|-----------------------------------|
| | | 리·동 | 번지 | | | |
| 2020.10.20. 2020.10.20. | | | | 367 1,692 | 1,059 | 소유상한 (1,000㎡) 면적초과 |
| 2020.12.03. 2020.12.03. | | | | 929 555 | 484 | |
| 2021.05.20. 2021.05.20. | | | | 1,081 | 81 | |
| 2020.12.21. 2020.12.21. | | | | 420 420 1,673 | 1,513 | 동일세대원 소유상한 (1,000㎡) 면적초과 |
| 2019.11.19. 2019.11.19. | | | | 106 592 | - | 농업경영 목적발급 |
| 2020.01.20. 2020.01.20. | | | | 529 | - | |
| 2020.01.20. 2020.01.20. | | | | 529 | - | |
| 2021.02.08. 2021.02.08. | | | | 187.5 | - | |
| 2020.08.19. 2020.08.19. | | | | 400 | - | |

2. 위법·부당사항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제한), 제7조(농지 소유 상한)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 1천㎡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면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따르면 시장, 구청장, 읍면 또는 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1천㎡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이내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또한 「농지법」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취득하려는 농지의 세대소유 면적의 합이 1천㎡ 초과인 4건에 대하여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하였고, 1천㎡ 미만 5건을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업경

영의 목적으로 신청한 2건에 대하여 서류 보완 없이 발급하였고, 농지전용으로 신청한 1건에 대하여 농업경영으로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 ◆◆◆장은 농지법 등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이장수당 지급 소홀

【기 관 명】 ◆◆◆사무소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이장기본수당 지급일 부적정

| 연번 | 지급월 | 공무원 보수일 | 지연일 (조기지급일) | 비고 |
|----|------------|------------|----------------|----|
| 1 | 2018-02-19 | 2.20. | 1 | |
| 2 | 2018-03-19 | 3.20. | 1 | |
| 3 | 2018-04-19 | 4.20. | 1 | |
| 4 | 2018-06-19 | 6.20. | 1 | |
| 5 | 2018-07-19 | 7.20. | 1 | |
| 6 | 2018-08-21 | 8.20. | -1 | |
| 7 | 2018-10-24 | 10.19. | -5 | |
| 8 | 2018-11-21 | 11.20. | -1 | |
| 9 | 2019-01-22 | 1.18. | -4 | |
| 10 | 2019-02-21 | 2.20. | -1 | |
| 11 | 2019-03-21 | 3.20. | -1 | |
| 12 | 2019-04-18 | 4.19. | 1 | |
| 13 | 2019-05-23 | 5.20. | -3 | |
| 14 | 2019-06-25 | 6.20. | -5 | |
| 15 | 2019-07-24 | 7.19. | -5 | |
| 16 | 2019-08-21 | 8.20. | -1 | |
| 17 | 2019-09-27 | 9.20. | -7 | |
| 18 | 2019-10-30 | 10.18. | -12 | |
| 19 | 2019-11-21 | 11.20. | -1 | |
| 20 | 2019-12-23 | 12.20. | -3 | |
| 21 | 2020-01-28 | 1.20. | -8 | |
| 22 | 2020-03-24 | 3.20. | -4 | |
| 23 | 2020-04-22 | 4.20. | -2 | |

| 연번 | 지급월 | 공무원 보수일 | 지연일 (조기지급일) | 비고 |
|----|------------|------------|----------------|----|
| 24 | 2020-07-21 | 7.20. | -1 | |
| 25 | 2020-08-28 | 8.20. | -8 | |
| 26 | 2021-07-22 | 7.20. | -2 | |
| 27 | 2021-08-19 | 8.20. | 1 | |
| 28 | 2021-09-27 | 9.17. | -10 | |
| 29 | 2021-10-26 | 10.20. | -6 | |

○ 이장변경 시 일할계산 미시행

| 소속 | 성명 | 위해측 일자 | 내 용 | 이장수당 지급액(원) | 비고 |
|----|----|-----------|-------------------------------------|----------------|----|
| A리 | | 2019.8.7. | 면직 | 0 | |
| B리 | | 2019.8.8. | 임명 (2019. 8. 8. ~ 2019. 12. 31.) | 200,000 | |

2.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통·리·반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실비변상)에 따르면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그러함에도 ◆◆◆사무소에서는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이장기본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보수지급일(20일)에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장기본수당 29건 중 7건은 최소 1일 조기 지급하였으며, 22건은 최소 1일, 최대 12일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통·이장 변경에 따른 기본수당 지급방법을 조례 등의 관련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함에도 ◆◆◆에서는 2019년 8월 A리 이장이 중도 변경되었으나 이장 기본수당을 일할계산하지 않고 이OO에게 일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물품·용역 계약 대가의 지급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대가지급 현황

| 일련번호 | 계 약 명 | 도급(납품)자 | 계약금액 (천원) | 대 가 청구일 | 대 가 지급일 | 지 급 기 한 | 지연일 | 비 고 |
|------|-------|---------|--------------|------------|-------------|---------------|-----|-----|
| | 15건 | | | | | | | |
| 1 | | | 12,444 | 2019.5.10. | 2019.5.24. | 2019.5.15. | 9 | |
| 2 | | | 9,826 | 2019.5.10. | 2019.5.23. | 2019.5.15. | 8 | |
| 3 | | | 2,140 | 2019.6.28. | 2019.7.16. | 2019.7.2. | 13 | |
| 4 | | | 1,900 | 2019.7.3. | 2019.7.16. | 2019.7.8. | 8 | |
| 5 | | | 6,770 | 2019.7.2. | 2019.7.16. | 2019.7.7. | 9 | |
| 6 | | | 2,930 | 2019.7.2. | 2019.7.16. | 2019.7.7. | 9 | |
| 7 | | | 4,691 | 2019.8.20. | 2019.9.3. | 2019.8.25. | 9 | |
| 8 | | | 1,959 | 2019.8.20. | 2019.9.3. | 2019.8.25. | 9 | |
| 9 | | | 9,000 | 2019.2.28. | 2019.3.8. | 2019.3.7. | 1 | |
| 10 | | | 4,750 | 2020.9.14. | 2020.9.22. | 2020.9.18. | 2 | |
| 11 | | | 4,427 | 2020.10.7. | 2020.10.20. | 2020.10.11. | 8 | |
| 12 | | | 1,582 | 2019.3.28. | 2019.5.30. | 2019.4.3. | 58 | |

| | | | | | | | | |
|----|--|--|--------|------------|------------|-----------|----|--|
| 13 | | | 13,168 | 2020.4.28. | 2020.5.14. | 2020.5.6. | 7 | |
| 14 | | | 6,831 | 2020.4.28. | 2020.5.14. | 2020.5.6. | 7 | |
| 15 | | | 1,170 | 2020.4.25. | 2020.5.29. | 2020.5.6. | 18 | |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 그럼에도 ◆◆◆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등 아무런 사유 없이 ***리 수해복구공사 외 14건에 대하여 위 대가지급 현황과 같이 최소 1일 최대 58일 대가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확인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확인 소홀 현황

| 신청기간 | 위임일자 누락 | 접수인 누락 | 비고 |
|----------------|---------|--------|----|
| 2019년 ~ 감사일 현재 | 8건 | 107건 | |

나. 위법 · 부당내용

-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의하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 제13조 제7항에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9. 1. 1.부터 현재까지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에 위임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위임장 8건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고 107건의 위임장에 접수인을

누락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재하지 않는 등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장은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위임장의 위임날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발급하고 접수인 날인,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확인 날짜 누락 현황

○ 2019년 : 228건 / 2020년 : 248건 / 2021년 : 221건

나. 위법·부당사항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에게 보내야 하고, 이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신고사후확인서 697건의 이장 확인 날짜를 누락하는 등 전입신고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 확인용 자료를 신고일부터 15일 이내 관할 이장에게 보내고, 이장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령한 뒤 관계 공무원이 날인하도록 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